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21회계연도 실적)

|| 목 차 ||

I.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3

II.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행정지원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과>
- 자활기금<행복나눔과>
-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과>
-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① 총 평

- 2021회계연도 우리 구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분야에서는 사업비 편성비율 83.79%, 사업비 집행률 20.99%로 나타났으며,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8.33점,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67%로 분석되었음
-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에서는 사업비 편성비율이 83.79%인데 비해 집행률은 20.99%로 저조하며, 집행률 부진의 주요원인은 사업비 편성액 규모가 큰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사업비 대부분이 사전절차 등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사전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78.33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은 90점 이상으로 양호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이 1/3 미만으로 저조하여 2021. 12.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2022. 7.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1/2로 확대함으로써 2022회계연도 기준 성과분석 시 해당 지표 개선이 전망됨
 - 타회계 의존율은 법정의무기금(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은 제외 대상으로써 우리 구는 상기 제외 대상 외 다른 기금을 운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표값은 없음
 - 기금 조성액 비율과 기금 수는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에 대한 기금 조성액 비율은 1.67%이고, 기금 수는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1개임
 - 기타의 경상적 경비 비율은 기금 총 지출액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우리 구 기금 모두 경상적 경비 지출이 없어 0%이므로 감점 사항 없이 운용함

2 지표별 분석결과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수성구	83.79	20.99	78.33	해당없음	1.67	1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 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은 평균 83.79%임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수성구	총계	19,198	22,912	83.79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행정지원과)	18,766	19,970	93.97
	자활기금	314	2,630	11.94
	옥외광고발전기금	20	115	17.39
	식품진흥기금	98	197	49.75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은 평균 20.99%임

※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수성구	총계	4,029	19,198	20.99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행정지원과)	3,666	18,766	19.54
	자활기금	257	314	81.85
	옥외광고발전기금	20	20	100.00
	식품진흥기금	86	98	87.76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5개 기금이 위원회 운영 적정성 90점 이상을 달성하고, 평균은 78.33점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비율이 1/3미만이라 0점이지만 2022. 7. 민간전문가 비율 1/2이 되도록 위원 구성 변경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수성구	평균					78.33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행정지원과)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미만	Y	Y	Y	0
	자활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④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의 비율은 지표 적용 대상 기금을 우리 구는 운용하지 않음으로 해당없음
- ※ 법정의무기금(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수성구		해 당 없 음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해당 지표에는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만 해당되어 1.67%임
- ※ 법정의무기금(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수성구	975,489	91,388	6,001	-	69,053	16,334	1.67

⑥ 기금 수 현황

- 분석대상 기금에는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만 해당

※ 법정 의무기금(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 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수성구	6	4	-	1	-	1

⑦ 기타

- 전년도(2020회계연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수성구>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편성비율	사업비 편성비율이 10%미만인 자치단체는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적극 활용 검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X	민간융자금 및 자활기업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이행 완료 (2021년 기준 11.94%)
		옥외광고발전기금	X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편성으로 이행 완료 (2021년 기준 17.39%)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률이 50%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해당사항 없음	X	해당사항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 권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X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및 운용 조례 제정(2020. 11. 10)
미회수채권비율	미회수채권 비율이 50%이상인 자치단체는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100%인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X	미이행 (징수 가능자에게 분기별 독촉 고지서를 발행하여 적극적인 납부 독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만년전문가 비율 1/3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O	이행
타회계 의존율	조례 제정을 통해 조성된 기금 중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조치 필요	해당사항 없음	X	해당사항 없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단체 평균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해당사항 없음	X	해당사항 없음
기금 수 현황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해당사항 없음	X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해당사항 없음	X	해당사항 없음

※ 2021. 7.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

- 경상적 경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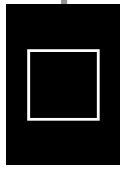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수성구		0	5,556	0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행정지원과)	0	3,75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자활기금	0	2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	0
	재난관리기금	0	1,440	0
	식품진흥기금	0	86	0



개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공용청사및공공시설 건립기금

행정지원과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17. 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2019.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2019.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 2020. 1. 신청사 건립기금 잔액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전입(8,067백만원)
- 2021.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10,350백만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014	11,073	3,753	7,320	16,334	127	534	△407	

II. 분석결과

1. 총 평

- 당초 2017년 설치된 신청사건립기금은 노후화된 수성구청사 건립을 위한 한정적 재원이므로, 신청사뿐만 아니라 동청사, 보건소, 문화·체육·교육·건강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을 폐지(시행 2020. 1. 1.)하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신설하였음

- 2020년 1월 신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8,067백만원,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10,350백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확보하여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21년도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만촌2동, 파동 행정복지센터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 및 실시설계 시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비의 2022년 이월 비중이 큼
- 2022년도 공사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월된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착공하는 만촌2동, 파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임
-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의 설치·운용은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이전·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고,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기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6	130	60.2	18,766	3,666	1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21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130백만원 선금 지출) 	60.2%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5,051백만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5,779백만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6,947백만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499백만원)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414백만원)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22백만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실시설계(5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1,029백만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1,016백만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1,166백만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277백만원)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178백만원)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0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실시설계(0원) 	19.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 이용이 불편한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문화 및 공간 공유가 가능한 복합청사 신축 추진을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2019년 지역 최초로 도입한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하여 계획 단계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고, 설계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성 및 작품성 있는 설계를 선정하여 수성구만의 독창성을 담은 공간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추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이월 포함)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4,000백만원	적립성 및 안정성	상
②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4,763백만원	"	상
③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6,314백만원	"	상
④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	222백만원	"	상
⑤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시설계	236백만원	"	상
⑥ 만촌3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0백만원	"	상
⑦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작지 리모델링 실시설계	74백만원	"	상
합 계	15,62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구청사와 동청사, 보건소, 문화·체육·교육·건강 등 주민 복리 증진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등으로 초기 조성(2020. 1월)
- 사업 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회수,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으로 16,334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조성된 기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신축·증축·개축 등 공사비, 설계·감리·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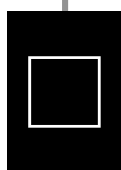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5개 동청사 신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 동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노후·협소한 구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예산 수반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기금 적립에 노력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9,144 %	20,087 %
	전년도 이월액			87 0.4
	전입금		8,067 88.2	10,350 51.6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927 44.4
	예수금			
	이자수입		77 0.9	267 1.3
	기타수입		1,000 10.9	456 2.3
지 출	합 계		9,144 %	20,087 %
	다음연도 이월액		87 1.0	15,095 75.1
	비용자성사업비		130 1.4	3,753 18.7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927 97.6	1,239 6.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7. 6. 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1. 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 2021. 6. 30.)

○ 연 혁

- 2017년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2020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 재정안정화계정 신설(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재원 승계)
 - 통합계정 근거 마련
- 2021년 : 통합계정 운용

○ 설치목적

- 재정안정화계정 :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도모
- 통합계정 :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재정 안정화계정	79,775	33,451	47,158	△13,707	66,068	230	15,000	△14,770	
통합계정	-	2,985	-	2,985	2,985	106	-	106	

II. 분석결과

1. 총 평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신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 (재정안정화계정) 2021년 일반회계로 472억원(본예산 265억원, 1회 추경 207억원)을 전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329억원(2회 추경 79억원, 3회 추경 250억원)은 추가 적립 예치함으로써 재원 조정을 통해 세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수성구의 재정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통합계정) 2021년 6월 통합계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1년 12월 지하수관리, 기반시설,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약30억원을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계정 :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재정안정화계정 : 일반회계 여유자금 적립 및 재원 필요시 사용으로 연도 간 재원조정 	기금 계정별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함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에 도달한 재원을 적립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불안정 상황에 대비

(통합계정)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재정안정화계정 : 예비비 최소화 지침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예치를 권장하여 향후에도 자원 적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하고 세입 부족 시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 통합계정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가능하며, 동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에 따라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하므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유지가 불가피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적립요건과 적립가능액에 따라 329억원(2회 추경 79억원, 3회 추경 250억원)을 추가 적립 예치함으로써 재원조성이 적정하다 판단됨
- 통합계정은 근거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한 여유자금 약30억원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맞게 예치함으로써 재원조성이 적정하다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정안정화계정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지방세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의해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어, 통합계정은 향후에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재정안정화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4,016	%	94,301	%	113,226	%
	전입금	53,000	98.1	40,000	42.4	32,877	29.0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00	1.9	54,016	57.3	79,775	70.5
	예수금						
	이자수입	16	0.0	286	0.3	574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4,016	%	94,301	%	113,226	%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4,016	100	79,775	84.6	66,068	5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4,526	15.4	47,158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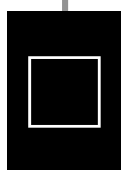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통합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98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2,985	100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985	%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985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행복나눔과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01. 1. 10.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 2011. 5. 30.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문개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
- 2021. 7. 1.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자활기금 기금명 변경)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96	28	256	△228	2,368	85	363	△278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실적 : 수입 28백만원, 지출 257백만원

'20년말 조성액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2,596	이자수입	19	전세점포 용자금 지원	110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45
			기계구입·시설보강지원	25
	자활사업 수익금 등	9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
			수성꿈드림 지원 등	47
합 계	28	합 계	257	

- 자활기업·사업단 및 공익성 기업 지원 : 180백만원
(전세점포임대용자 110백만원,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45백만원, 기계구입·시설 보강지원 25백만원)
- 자활참여자 및 저소득층 지원 : 77백만원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수성꿈드림 지원 등 47백만원)
- 장기 체납액(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상환능력이 있는 4명의 대상자에게 분기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 일부 상환 진행함
- 기금이자 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자활기업·사업단 및 공익성 기업 등에 전세점포임대 용자지원을 통해 사업운영이 원활하도록 기여함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지원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므로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적합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6	130	48.9	314	257	81.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00백만원, 2건)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50백만원, 1건) •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 (30백만원, 1명) • 자활기업·사업단 기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사업 (25백만원, 2건) •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200세대) •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30백만원, 50명) •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1백만원,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7백만원, 1건)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없음) •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 (28백만원, 1명) • 자활기업·사업단 기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사업 (25백만원, 2건) •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79세대) • 인자수성꿈드림 지원사업 (30백만원, 50명) •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980천원, 4건) 	48.9%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00백만원, 2건)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50백만원, 1건) •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100세대) •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 (60백만원, 2명) • 자활기업·사업단 기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사업 (25백만원, 2건) • 수성꿈드림 지원사업 (45백만원, 75명) •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3백만원,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사업단 전세자금융자 (100백만원, 2건) • 공익성기업 전세자금융자 (10백만원, 1건) •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129세대) •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 (45백만원, 2명) • 자활기업·사업단 기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사업 (25백만원, 3건) • 수성꿈드림 지원사업 (43백만원, 117명) • 전세권설정 등 수수료 지원 (3백만원, 6건) 	81.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기업 전세자금 용자를 통해 신규 자활기업 운영이 원활하도록 기여함
-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자활기업의 전문성을 높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신규 자활기업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활참여자의 기술 향상을 도모함
- 전세자금용자 목표달성도(73%)에 비해 자활사업 지원 및 저소득층 복지 증진사업 목표달성도(90%)는 다소 높은 편임
- 향후 자활기업·사업단 및 공익성 기업 등에 전세자금용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사업단·공익성기업 전세점포임대 용자금 대여 •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자활기업·사업단 시설보강지원 • 수급자·차상위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목표달성률 82% • 전세자금용자 지원 3건 •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2명 • 기계구입·시설보강지원 자활근로사업단 3개소 •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기금이자수입 활용) 129세대 주거환경개선 • 자산형성(내일키움통장 추가적립)지원 117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계획 달성률 82%

- 저소득층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을 통해 매출과 전문성 향상, 자활기업·사업단 및 공익성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활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현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성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기금의 형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이월 포함)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민간융자금 대여 및 지원	153백만원	• 자활기업·사업단 등 수요발생 시 신속한 용자지원으로 자립 촉진 (존치필요)	상
② 토탈주거환경개선사업	30백만원	• 저소득층 효율적 주거환경 지원 (존치필요)	상
③ 청장년층 체험형 인턴 지원	120백만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의욕 고취 (존치필요)	상
④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60백만원	• 자활기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자활사업 활성화 기여 (존치필요)	상
합 계	36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통·폐합으로 전입금 및 출연금 2,328백만원 초기 조성(2011. 5월)
- 매년 사업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회수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2021년 말 기준 2,368백만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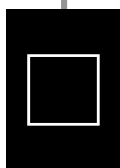
- 자활기업·사업단 및 공익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장기 체납채권 결손처분 이후 잔여 미회수채권에 대해 분기별 납부독촉 고지서 발부 및 납부 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828	%	2,727	%	2,62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	0.1	20	0.7	3	0.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776	98.1	2,654	97.3	2,596	98.9
	예수금						
	이자수입	42	1.5	35	1.3	19	0.7
	기타수입	8	0.3	18	0.7	6	0.2
지 출	합 계	2,828	%	2,727	%	2,624	%
	비용자성사업비	75	2.7	113	4.2	147	5.6
	용자성사업비	100	3.5	17	0.6	110	4.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653	93.8	2,596	95.2	2,368	90.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8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 2008. 12. 30 제726호
 - 일부개정 : 2010. 9. 30 제810호
 - 일부개정 : 2016. 12. 12 제1124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7	58	20	38	95	20	58	△38	

II. 분석결과

1. 총 평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조성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었음
- 2012년도까지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2013년 만촌1·2동 해피타운 사업지구 내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개선사업(50백만원), 2015년도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 간판개선 사업(133백만원) 등의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전력을 향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 2015년도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의 급증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소형 화물트럭)을 구입(18백만원)하여 급증하는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2018년도에는 노후간판 철거사업(8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백만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및 단속 카메라 구입(21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백만원)의 추진으로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음
- 2020년도에는 재원의 규모가 작아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재원을 적립하였으며
- 2021년도 지산2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백만원)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충분한 자원 조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	-
'21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2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을 통해 불법 전단지 등의 민원발생감소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촌1·2동 해피타운사업 지구 내에 친환경 태양광 LED 간판 개선사업(2013년)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2015년)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차량구입(2015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18년) • 노후간판 철거사업(2018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19년)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2019년) •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2019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2021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적정사업비를 적립하여 향후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52백만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상
③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 ④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후방 카메라 설치	6백만원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으로 95백만원을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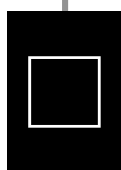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8	%	57	%	11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7	73.1	36	63.2	57	49.6
	예수금						
	이자수입	1	1.3	1	1.7		
	기타수입	20	25.6	20	35.1	58	50.4
지 출	합 계	78	%	57	%	115	%
	비용자성사업비	42	53.8			20	17.4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6	46.2	57	100	95	82.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97년 설치
 - 2004. 12. 30. : 조례 제정
 - 2009. 12. 30. : 조례 개정
 - 2011. 12. 12. : 조례 개정
 - 2012. 12. 10. : 조례 개정
 - 2018. 12. 10. : 조례 개정
 - 2021. 3. 30. : 조례 개정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해 설치
- ※ 기존 재해대책기금(1997년), 재난관리기금(1998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48	2,165	1,440	725	3,473	2,349	924	1,42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 그 재원조성은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법정적립금, 이자수입 등)
- 2021년도 주요 지출 내용은
 - 재난취약지역 재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127,031천원
 - 재난·재해 대비 관련 자재(제설제) 및 장비(제설함) 구입 128,263천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및 방역소독 용역 실시 184,185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방역물품 지원 관련 748,624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홍보물, 운영물품, 셔틀버스 임차 등) 74,040천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 임차 및 구입(열화상카메라 등) 43,236천원
-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총당 목적 및 재원 규모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기금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은 부적절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 사유시설의 보수·보강 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u>'20년도</u>			<u>'21년도</u>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73	2,179	68.7	1,821	1,440	79.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 등 긴급장비 임차(60백만원) • 재해 예경보시스템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재난재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구입 (30백만원) • 제설자재 및 수방자재 긴급구입 (20백만원) • 한파저감시설 설치(6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긴급구입(140백만원) •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피해확산방지 연구용역(45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150백만원) • 산사태 위험지 사전 재해 예방 사업 (30백만원) • 내진성능평가용역(388백만원) • 시설부대비(1백만원) • 제설제 살포기 구입(87백만원) • 코로나 19 종합 상황실 물품 구입 (4백만원) • 스탠드형 자동손소독기 구입(1백만원) • 코로나 19 예방 물품 지원 및 홍보 (450백만원) •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14백만원) • 마스크 등 방역물품구입(928백만원) • 거리두기바닥스티커구입(5백만원) • 도시철도 방역시설설치(22백만원) • 코로나19 구급차량임차(72백만원) • 전통시장 방역소독지원(4백만원) • 코로나19 예방홍보물 발송 우편 수수료 (3백만원) • 코로나19 의료지원(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12백만원) • 배수펌프임차(18백만원) • 한파대비 시내버스 정류소 바람막이 설치(5백만원) • 수성파크골프장 사무실 복구용역 (5백만원) • 폭염 홍보물 제작(18백만원) •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34백만원) • 코로나19 종합상황실 필요 물품 등 구입(2백만원) •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피해확산방지 연구용역(45백만원) • 고모동 산6-6일원 계류보전사업 (27백만원) • 공설 경로당 내진 성능 평가 용역 (388백만원) • 제설장비구입(53백만원) • 코로나19 열화상카메라구입(30백만원) • 코로나19상황실 필요물품구입 (5백만원) • 손소독기 구입(1백만원) •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900백만원) • 자가격리자 배부 쓰레기 봉투 구입 (10백만원) • 보건소 지원 물품 및 방역 용역 (42백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물품 지원(12백만원) • 코로나 홍보물 제작(40백만원) •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13백만원) • 거리두기 바닥스티커구입(5백만원) • 도시철도 방역시설 설치(22백만원) • 코로나 19 특수구급차 이송 임차비 (72백만원) • 전통시장방역물소독용역(4백만원) 	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화훼농가 지원(13백만원)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장비 구입 (196백만원) • 양심양산대여사업(16백만원) • 우리동네 그늘쉼터 운영(72백만원) • 도심속 무더위탈출 버스킹(50백만원) • 폭염극복 찾아가는 영화관(45백만원) • 폭염취약계층 양산구입(20백만원) • 독거노인폭염극복물품구입(14백만원) • 노숙인 건강한 더위나기 물품키트구입 (3백만원) • 거동 불편자 등 폭염극복 물품 구입 (6백만원) • 범어 3동 야외 무더위 쉼터 조성 (20백만원) • 야외 무더위 쉼터 편의 시설 설치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손소독제 및 배너 지원 (2백만원) • 외국인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 통역 활동수당(3백만원) • 마스크 시험 수수료 및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요금(3백만원) • 코로나19예방을 위한 검체검사비(103백만원) •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매(24백만원) • 코로나19방지 체온계구매(54백만원) • 소상공인 화훼농가 지원(13백만원) • 수성아트피아 방역 게이트 구입 (16백만원) • 코로나19열화상카메라구입(36백만원) • 보건소 음압텐트 및 열화상감지기 구입(33백만원) • 폭염탈출 수성파크 콘서트 수행 위탁 용역(20백만원) • 찾아가는 어르신 영화관 행사 용역(20백만원) • 한여름밤의 도심 속 힐링 음악회 수행위탁 용역(30백만원) • 노숙인 건강한 더위나기 물품키트 구입(2백만원) • 독거 노인 폭염극복 물품 지원 (14백만원) • 폭염 취약계층 배부 양산 구입(21백만원) • 범어3동 야외 무더위쉼터 정비사업(18백만원) • 야외 무더위쉼터 편의시설 설치(4백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계</p>	<p style="text-align: center;">3,173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2,179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50백만원) •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2백만원) • 재난재해 관련 홍보물 제작구입(30백만원) • 폭염관련 대책(20백만원) • 제설자재 및 수방자재 긴급구입 (50백만원) • 한파저감시설 설치(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관련 홍보물 제작구입(2백만원) • 폭염 관련 홍보물 제작(21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자재 구입(80백만원) • 한파저감시설 설치(9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127백만원) •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철거(3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장비 구입(49백만원) •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및 방역소독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관련 자재 구입(70백만원) •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200백만원) • 산사태 위험지역 계류보전시설 설치(50백만원) • 재난·재해관련 장비 구입(48백만원) •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및 방역소독 용역(560백만원) •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4백만원) •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20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38백만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약품 구입 (10백만원) •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통장 활동비 (1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500백만원) • 코로나19 검체검사비(100백만원)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장비 구입 (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백만원) •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4백만원) •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2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 (35백만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약품 구입 (26백만원) •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통장 활동비 (1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454백만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지원 (260백만원) • 코로나19 마스크(기부물품) 유해성분 검출의뢰 수수료 및 검체검사비 (2백만원)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장비 임차·구입 (43백만원) • 코로나 19 확산 방지 홍보물 제작(12백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74백만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관련 물품·장비 지원 및 구급차 이송 용역 (33백만원)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역학조사 통역 지원수당(1백만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물품 배송 대행료(2백만원) • 코로나 국민지원금 전담창구 운영 물품 구입(16백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계</p>	<p style="text-align: center;">1,821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1,440백만원</p>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 규모가 한정적이므로 타 재난관리 책임기관 소관 시설에 기금 사용 불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및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출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유동적임
- 강설,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대구광역시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예방, 재난심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 하기 위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사업(교육·홍보) •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 재난 관련 각종 장비구입사업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각종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 마련으로 운용계획 목표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속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각종 재난(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으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우려, 지반침하 등 피해 발생과 신종 코로나19, AI, 메르스 등의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경 반영, 예비비 사용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기금으로 예산 확보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필요시 신속하게 기금운용변경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 후 법적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비용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 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	①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임차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예산에 편성 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탄력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며, 기금 집행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 	상
	②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수선 및 유지관리	2백만원	”	상
	③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	상
	④ 폭염 및 한파대비 용품 등 구입	10백만원	”	상
	⑤ 제설자재 및 수방자재 긴급 구입	10백만원	”	상
	⑥ 재난·재해관련자재 긴급 구입비	100백만원	”	상
	⑦ 재해예방 및 복구 시설비, 시설부대비	151백만원	”	상
	⑧ 제설제 살포기 및 양수기 구입	23백만원	”	상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	① 신종감염증 예방물품 및 지원	210백만원	”	상
	② 신종감염증 예방 방역소독 용역	50백만원	”	상
	③ 방역물품 검사 수수료 등	3백만원	”	상
	④ 신종감염증 확산방지의료 및 생필품 구입	250백만원	”	상
	⑤ 신종 감염증 확산방지 장비 구입	60백만원	”	상
합 계	92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총 조성 규모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약 47억원 정도임
- 피해규모에 따라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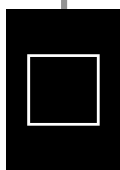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늘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 집행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기금을 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725	%	8,427	%	4,912	%
	전년도 이월액			433	5.1		
	전입금	862	11.1	925	11.0	2,041	41.6
	보조금	206	2.7	295	3.5	93	1.9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558	84.9	6,663	79.1	2,748	55.9
	예수금						
	이자수입	99	1.3	111	1.3	30	0.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725	%	8,427	%	4,912	%
	비용자성사업비	629	8.1	2,179	25.9	1,440	29.3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096	91.9	2,748	32.6	3,472	70.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500	41.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연도 : 2003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정 : 2003. 5. 20. 조례 제544호
 - 일부개정 : 2006. 9. 13. 조례 제642호
 - 일부개정 : 2006. 11. 20. 조례 제64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08. 1. 10. 조례 제67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 2008. 5. 30. 조례 제698호
 - 일부개정 : 2011. 3. 10. 조례 제833호
 - 일부개정 : 2013. 7. 30. 조례 제934호
 - 일부개정 : 2014. 12. 30. 조례 제100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8	80	102	△22	66	80	105	△25	

II. 분석결과

1. 총 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총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의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23백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15백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사업(24백만원)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 나트륨 줄이기 사업,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외식산업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2	62	75.6	98	86	8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음식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획일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4백만원) • 위생취약시설 조리용 칼 지원 (8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 지원(15백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원업소 지원(2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630천원)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1백만원) • 위생취약시설 조리용 칼 지원 (8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 지원(12백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원업소 지원 (16백만원) 	75.6%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4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 지원(15백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원업소 지원(2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8백만원) • 안심음식점 육성·지원사업 (12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운영수당 (630천원) • 심의위원회 개최 현수막 제작 등 (150천원) •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23백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지원 (4백만원) • 나트륨줄이기사업 지원(15백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원업소 지원 (2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8백만원) • 안심음식점 육성·지원사업 (12백만원) 	8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외식업소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나트륨줄이기)을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효과를 나타냄
- 안심식당 방문 인증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89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형성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	2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할 경우 예산성립 불투명 • 자율적·탄력적 집행 불가능 	상
② 식품접객업소 지원	21백만원	"	상
③ 모범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지원	24백만원	"	상
합 계	7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시 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매년 사업비 집행 후 재적립되는 예치금회수(2021년말 기준 66백만원 적립)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재원조성이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개선을 위해 존치하여야 하며,
- 향후 수입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40	%	167	%	168	%
	전입금						
	보조금	39	16.3	36	21.6	52	30.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4	60.0	96	57.5	88	52.4
	예수금						
	이자수입	2	0.8	1	0.6	1	0.6
	기타수입	55	22.9	34	20.3	27	16.1
지 출	합 계	240	%	167	%	168	%
	비용자성사업비	110	45.8	62	37.1	86	51.2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6	40.0	88	52.7	66	39.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4	14.2	17	10.2	16	9.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